



### 구체적 과제 ⑤

## 과학수사 정착을 위한 연구 강화

### 추진목표

- 수사와 관련한 인권침해 시비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과학수사체계 정착
- 과학수사역량의 강화를 통해 검찰 수사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 현황

대검찰청 과학수사과, 컴퓨터수사과 등에서 과학수사와 관련한 기획·연구업무 및 분석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현재까지 과학수사 연구현황은 “[별표] 과학수사 연구현황” 참조), 현재 종합적 과학수사체계 구축에까지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일선청에서도 과학수사능력을 보유한 인원, 장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 추진계획

과학수사 영역을 정확히 파악·분류하고 각 영역에 따라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 |           |  |
|-----------|--|
| 2004. 3.  | 법무부, 대검, 법무연수원 내 연구 책임주체 선정<br>연구단위 구성 및 추진기구 확정 |
| 2004. 9.  | 연구단위별 연구 진행<br>과학수사역량 제고 추진계획 초안 확정              |
| 2004. 12. | 내부보고 및 의견조회<br>법무부정책위원회 논의                       |

### 추진계획 확정

※ 예산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2005년 예산부터 점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 추진

2005. 1.~

추진계획에 따른 과학수사역량 강화 지속 추진

### 추진부서

검찰국, 법무연수원



- 유전자감식**
- 1992. 3. 국내 최초로 감식기법 개발
  - 1995. 유전자감식 기법을 이용한 ABO식 혈액형 및 성별 판정기법 개발
  - 1996. 6. DIS80, WWA 등 한국인에 적합한 7가지 기법 개발
  - 1998. 9. 모계 혈연관계 확인을 위한 미토콘드리아 DNA 염기서열 기법 개발
  - 2003. 12. 정액 특이반응 검출법 개발
  - 현재 「초소량 DNA를 이용한 STR profile의 표준화 및 평가에 대한 연구」 진행 중
- 마약감식**
- 1992. 9. 소변을 이용한 필로폰 및 대마 투약 여부 감식기법 개발
  - 1992. 10. 압수 마약류 진위 여부 표준 감식기법 개발
  - 1993. 12. 모발에 의한 필로폰 감식기법 개발
  - 1994. 12. 마약류 감식을 위한 미세결정 시험법 개발
  - 1996. 10. 소변을 이용한 코카인 및 아편 일카로이드 투약 여부 표준 감식기법 개발
  - 1997. 9. 필로폰 이성체 감식기법 개발
  - 2001. 11. 모발에서 엑스터시 마약성분 감식기법 개발
  - 현재 대마성분 모발 감식기법 연구 진행 중
- 문서감정**
- 1994. 12. 필적 기재와 인영 날인간의 선후 표기 감식기법 개발
  - 1997. 12. 수지 제판기 도입, 수지판 이용 인영 위조 감정기법 개발
  - 현재 문서 작성시기 감정기법 연구 진행 중
- 심리분석**
- 1995. 피신문자의 행동징후에 대한 임상실험 등 심리분석기법 개발
  - 2002.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타당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
  - 현재 뇌파를 이용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연구 진행 중
- 음성분석**
- 1994. 11. 음성에 의한 동일인 여부 판정기법 개발
  - 1995. 음성·음향 편집 및 불량 테이프 음질 개선기법 개발
  - 현재 화자 식별에 영향을 미치는 음향 파라미터 연구 진행 중
- 형사사진**
- 현재 불량 CC-TV 이미지 분석기법 연구 진행 중
- 발간책자**
- 1996. 위조 범죄와 문서감정
  - 1996~1998. 유전자정보 은행 구축에 관한 연구 보고(매년 각 2권씩 총 6권)
  - 1997. 심리분석의 이론과 실무
  - 2003. 과학수사 연감

# 6

## 검사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립

**구체적 과제 ①** 수사지휘 및 인권옹호기능 강화를 위한 검찰 조직개편

**구체적 과제 ②**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찰 인사제도 확립

### 구체적 과제 ①

## 수사지휘 및 인권옹호기능 강화를 위한 검찰 조직개편

### 추진목표

- 검찰의 준사법기관성 회복 및 인권보장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립
- 수사권의 적정한 행사, 업무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강화

### 현황

강력부, 마약수사부 등 직접수사기능의 계속적 확대로 검찰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은 약해지고, 검찰이 경찰과 함께 1차 수사기관화 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하여 1차 수사 기관적 성격을 띤 인지부서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형사부, 공판부의 업무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이들 부서의 소외현상마저 발생하고 있다. 또, 상급청의 비대화로 일선청의 기능강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분권화·자율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검찰 수사에 대하여 공정성, 형평성에 관한 불신이 유포되고, 인권침해 시비가 유발되면서 검찰의 인권보장기관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추진계획

#### 기본방향

- 검사의 준사법기관 및 인권보장기관으로서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검찰조직을 재설계·구축
- 검찰 내외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검찰 조직개편안 확정
- 검찰 조직개편 후 타당성 여부 지속 검증 및 시대변화에 부응한 조직개편 지속 추진

#### 추진방안

- 법무부 검찰국, 정책기획단, 대검, 서울고·지검 검사, 외부 전문가들로 검찰 조직개편을 논의할 「제도개선 연구팀」을 구성하여 조직개편방안 논의
- 검찰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팀 논의에 반영
- 검찰 조직개편 후 「평가단」을 구성하여 검찰 조직개편 적용 후 타당성 검토
- 검찰 조직개편 후에도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검찰 조직개편을 지속 추진

#### 추진일정

2003. 12.~ 2004. 3. 제도개선연구팀 발족, 연구 진행  
2004. 1.~3. 각급청 의견수렴  
2004. 4. 조직개편(안) 초안 확정  
2004. 4. 법무부정책위원회 논의  
2004. 4.~5.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협의  
2004. 5.~6. 대통령령 개정(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공포)  
2004. 8. 새 검찰조직에 따른 인사 실시  
※ 법률개정사항 발생시 2004. 12. 말까지 법률개정 완료  
2005. 2. 「검찰 조직개편 평가단」 구성, 평가 진행  
2005. 9. 평가보고서 완료  
2005. 10.~12. 평가에 따른 추가 보완작업 실시  
2006. 이후 지속적인 검찰 조직개편 검토

### 추진부서

검찰국

## 구체적 과제 ②

###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찰 인사제도 확립

#### 추진 목표

- 인사대상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의 구축
-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인사관행 확립
- 장기경력 검사들의 수사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인사운용체계 개발

#### 현황

기존의 검사인사는 상급자의 평가에 의존하여 이루어졌으며, 그 평가 또한 일관성,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검사들 스스로 자신들의 인사에 대한 승복감이 부족하고, 검사인사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 확보에 장애요인이 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검사의 업무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른 역량을 공정하게 측정하여 인사에 반영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합리적 인사를 통하여 검찰의 사명과 목표를 더욱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선진 인사관리시스템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무부는 2003년 검찰 인사와 관련하여 다면평가를 도입하고 검사 복무상황표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그 이외의 검찰인사제도에 대한 종합적 대책의 마련을 위해 법무부는 2003년 12월 제도개선연구팀을 발족한 바 있다.

기존에 검사의 직급이 검찰총장, 고등검사장, 검사장, 검사 등 4단계 체계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로 인한 승진부담 및 과도한 경쟁이 검사의 신분보장 및 수사 독립성의 저해요소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평생검사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2003년 검찰청법 및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로 이원화하고 단일호봉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인사와 관련하여 고호봉 검사의 증가에 따른 평검사들의 업무부담 가중 및 인사운영상의 부담이 현실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 추진 계획

##### 검사직급제 폐지 및 단일호봉제 도입에 따른 조치 이행

- 검사직급제 폐지 및 단일호봉제 도입에 따른 인사제도의 개편 및 검사 중 부적격자 심사를 위한 검사직격심사제도 시행 방안 마련
2003. 12.~ 2004. 3. 제도개선연구팀 발족, 연구 진행  
2004. 3. 인사제도 개편방안 마련, 내부 및 외부 의견 수렴  
2004. 3. 검찰인사위원회 상정

##### 검찰인사시스템 개선

###### 〈공정하고 투명한 검사 평가제도의 확립〉

2004. 2.~ 3. 제도개선연구팀에서 인사시스템 개선의 기본방향 정립, 외부용역업체 와의 공동추진 방안 검토  
2004. 4.~ 12. 검사업무실적 평가 및 역량평가 방안수립, 각 직무분석 실시  
2005. 4.~ 12. 시범실시  
2006. 1. 본격실시

##### 합리적 검사 인사구도 연구·수립

- 검사 직급폐지 및 장기경력 검사의 증가와 관련, 검찰조직 역량을 극대화함과 아울러 조직통합을 이를 수 있는 합리적 검사 인사구도 수립

2003. 12.~ 2004. 6. 제도개선연구팀 발족, 연구 진행  
2004. 1.~ 6. 각급청 의견수렴  
2004. 6. 검사 인사구도(안) 확정  
2004. 7. 법무부정책위원회, 검찰인사위원회 상정



# 7

## 범법자 사회복귀 및 재범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

- 구체적 과제 ① 수용자 교정·교화 프로그램의 개선
- 구체적 과제 ② 교정시설의 현대화 및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
- 구체적 과제 ③ 보호관찰의 선진화로 재범방지역량 강화
- 구체적 과제 ④ 소년보호교육기관 청소년범죄 대처 시스템 강화

## 구체적 과제 ①

### 수용자 교정·교화 프로그램의 개선

#### 추진 목표

- 디지털지식정보 산업화에 부응하는 첨단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실시
- 범죄유형, 연령, 형기, 국적 등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교정·교화 프로그램 정비
- 수용자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화프로그램의 개발

#### 현황

현재 직업훈련의 직종은 총 80개에 이른다.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는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직종을 개편, 증설하고 있으나, 급격한 산업사회에 발맞추어 적시에 직업훈련을 개편하는 것이 그리 용이하지는 않다. 특히, 디지털지식정보 산업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보용용CAD, 전자제어차량정비 등 첨단직종 중심으로 직업훈련 직종을 개편하고, 직업훈련 시설 및 장비를 확충·보완하였으나, 첨단산업인력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완전히 정착되지는 못한 실정이다.

#### 직업훈련현황

(2004. 1. 현재)

훈련직종	총 80개 직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직종 : 제과제빵기능사 등 60개 직종</li> <li>• IT 관련 : 정보용용CAD 등 20개 직종</li> </ul>
훈련인원	영동포교도소 등 32개 기관 4,3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직업훈련 3,706명</li> <li>• 일반직업훈련 724명</li> </ul>

마약류사범·알콜중독자 재활교육 등이 시행되고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볼 때 교정시설에 수용자 각각의 범죄유형, 연령, 형기, 국적 등을 고려한 개별처우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점증하고 있는 마약류사범에 대하여는 재범 및 범죄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활교육을 더 발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 마약류사범 치료·재활프로그램 현황

(2004년 1월 현재)

종류	내용
운동요법	웨이트 트레이닝, 단전호흡 등 (의정부교도소 시범운영중)
정신교육	정신과 전문의 등과 개별·집단상담
	마약피해 사례 등에 대한 시청각 교육
	전문가 및 마약중독 경험자 초빙교육
	반성문, 자서전 쓰기
직업훈련	출소 후 생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

2003년도 마약류사범 재활교육 실적 : 1,683회 22,821명

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일부 시행되고 있기는 하나,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다. 시행되고 있는 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수용자들의 능동적 참여가 부족한 실정이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프로그램 개발이 부진하다. 한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예산의 부족이 다시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가져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 문화 프로그램 및 수용자 참여 현황

(2004. 1. 현재)

구분	실시기관	참가인원(명)	비고
서예반	안양교도소 등 29개기관	218	여성수용자 13명
회화반	서울구치소 등 14개기관	90	
문예반	성동구치소 등 3개기관	14	
악대반	안양교도소 등 15개기관	118	
합창반	서울구치소 등 19개기관	491	여성수용자 24명
농악반	김천교도소 등 3개기관	52	
사물놀이반	청송교도소 등 3개기관	45	
권투반	천안소년교도소	11	
단학반	공주교도소 등 2개기관	65	
분자반	청주여자교도소	16	여성수용자



연극반	천안소년교도소	10
도예반	안양교도소 등 2개기관	32
다도반	청주여자교도소 등 2개기관	30
꽃꽂이반	경주교도소	10
<b>합계</b>		<b>1,202</b>

#### 추진 계획

효과적인 직업훈련을 위하여, 현행 관주도의 직업훈련체계를 관·산·학 공동참여체제로의 전환, 유기적 취업연계 방안 모색

- 2004. 1.~ 6. 학계, 유관기관단체 공동연구 참여체제 구축
- 2004. 7.~ 12. 현행 직업훈련체계 분석 및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 2005. 1.~ 관·산·학 공동참여체제 구축 및 세부추진계획 시행
- 2007. 시화직업훈련교도소 완공 및 교도소 내 직업전문학교 설립 추진

수용자에 대한 개별처우의 강화 및 문화적 다양성 증진을 위한 교정·교화 프로그램 개발

- 2004. 1.~ 6. 여자수용자의 문화공간 확보 : 청주여자교도소내 '문화의집' 설치추진
- 2004. 1.~ 6. 교정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교정·교화 프로그램 개발팀' 및 '문화·교육 관련 외부전문가 자문단' 구성
- 2004. 6.~ 12. 교정·교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정비 (마약류사범 치료·재활 프로그램의 개선 포함)
- 2004. 6.~ 현재 의정부교도소에서 시범운영 중인 '운동요법을 통한 기결 마약류 사범 재활교육'의 확대시행
- 2005. 1.~ 개발된 프로그램의 시행  
지속적인 문화공간 확보 노력(2005년 이후 교정시설 신축시 반영)

각 교정시설별로 수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고, 매년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이를 전체 교정·교화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반영

#### 추진부서

교정국

#### 구체적 과제 ②

#### 교정시설의 현대화 및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

#### 추진 목표

-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시설의 현대화 및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신규 시설 확충(혼거수용실 1인당 면적 0.75평 확보 목표)
- 수용자들에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의사 34명 포함 의료 인력 174명 증원 필요) 및 시설의 확보

#### 현황

전국 45개 교정시설의 수용인원 정원이 44,350명인데, 현재 수용인원은 위 정원보다 16,000여명이 초과된 상태다. 200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혼거실의 1인당 사용 면적은 0.53평에 불과하다(이에 비하여 미국은 1인당 1.15평, 일본은 1인당 0.78평에 이른다). 과밀수용의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교정시설의 개선과 신설에 소요되는 예산문제로 인하여 시설 확충이 일시에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2002년 12월 30일 법무시설기준규칙을 개정하여 혼거수용실 1인당 면적을 0.75평(중전 1인당 기준면적 0.5평)으로 상향조정하였는데, 최소한 위 기준에 이를 때까지는 교정시설을 적극적으로 확충해나가야 할 것이다. 시설의 노후화 문제도 심각하다. 안양교도소 등 18개 기관은 시설이 준공된 지 25년이 경과하여 시설 개선 없이는 수용자 처우 개선에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태다.

현재 수용자 1인당 의료비는 약 89,000원 정도인데, 이 정도의 의료비로는 외부병원 진료, 약품 제공 등 의료서비스를 수용자에게 충분히 제공하기 어렵다. 또, 현재 의료인력 151명으로는 수용자에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조차 제공하기 곤란한 상태다. 의료시설의 평균 사용



연수가 20여년에 이르는 등 의료시설의 부족과 노후화도 심각하다.

#### | 추진계획 |

##### 시설의 증·개축 및 신설

###### 〈노후시설 이전 및 증·개축〉(10개 기관)

교정시설 관련 연도별 예산 투입 예상액							(단위 : 백만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이후	합계	
38,724	98,552	117,541	237,833	192,662	590,855	1,276,167	

- 순천교도소 : 2004년 2월 준공 예정
- 마산교도소 : 2007년 준공 예정
- 장흥교도소 : 2008년 준공 예정
- 광주교도소 : 2009년 준공 예정
- 안양·의정부·전주교도소, 부산구치소, 영등포교도소, 영등포구치소 : 2011년까지 점차적으로 준공 예정

###### 〈기관신설〉(9개기관)

- 충주·통영구치소 : 2004년 1월 준공 예정
- 포항교도소 : 2005년 11월 준공 예정
- 영월·밀양·해남·시화직업훈련교도소 : 2007년 준공 예정
- 정읍·속초교도소 : 2008년 준공 예정

###### 〈수용동 증·개축〉(5개 기관)

- 서울구치소 여자수용동 : 2004년 4월 준공 예정
- 제주·군산·강릉·홍성교도소 : 2007년까지 순차적으로 증·개축

###### 〈향후 신설 추진〉(7개 기관)

- 영동·상주·거창·남원·의성·영덕교도소, 서울북부구치소 : 2010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

#### 의료서비스의 개선

- 단기 과제 : 수용자 의료비 증액 및 의료환경 개선, 중증환자 관리거실 지정 운영, 교정공무원 중 간호조무사 양성, 공중보건의사 증원, 수용자 건강검진제도 개선, 여성수용자 전용 진료실 설치 등
- 장기 과제 : 의료인력 증원, 건강보험 적용 추진 등
- 2003년 9월부터 설치·운영된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기획단"에서 마련한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방안」에 따라 2004년 1월 중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개선과제를 추진할 예정

#### | 추진부서 |

교정국



### 구체적 과제 ③

## 보호관찰의 선진화로 재범방지역량 강화

### 추진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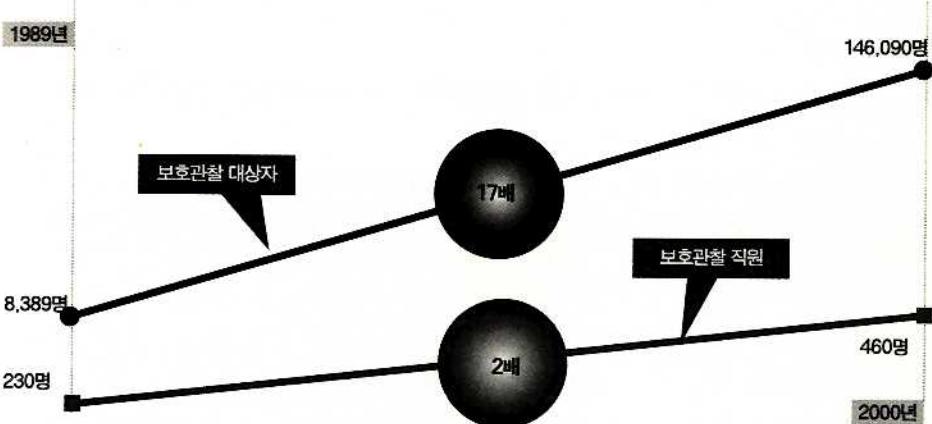
- 보호관찰의 형사사법체계상 기능과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시설·사회자원활용시스템 등 조직체계를 완비
- 선진 보호관찰기법의 연구·개발, 과학적 보호관찰업무시스템 구축 등 보호관찰 선진화 지속 추진
- 보호관찰의 형사사법적 기능 강화를 위한 판결전조사 확대실시(성인으로 확대), 벌금형 대체수단으로 사회봉사명령을 활용하는 제도 도입 등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실질적 보호관찰, 충실히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을 위한 보호관찰업무의 내실화 지속 추진
- 보호관찰소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는 대상자의 출석에 따른 경제적, 시간적 고충 해소와 면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현지상담제 실시 강화

### 현황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감독인력 및 시설의 절대 부족으로 보호관찰의 본래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사회 내 처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보호관찰 대상 사건수는 급증하고 있는데 반하여 보호관찰인력의 증원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내실있는 보호관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 分	보호 관찰 인력 국가간 비교					(2002년 기준)
	한 국	미 국	일 본	영 국	뉴질랜드	
직원 1인당 대상자 수	318	66	56	18	22	
보호관찰직원 수	460	68,491	1,330	12,755	800	
보호관찰대상자 수	146,090	4,486,600	75,114	229,384	17,856	

### 개정 이후 보호관찰직원 대비 보호관찰대상자 증가 현황



보호관찰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인력의 증원과 더불어 외출제한명령음성감독시스템, 이동보호관찰시스템, 보호관찰통합정보시스템 등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과학적인 통제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 사회 내 처우인 보호관찰이 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나 사회복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수적이나, 현재 자원봉사자들의 전문성이 미약하고 전문가 활용시스템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다. 또한, 보호관찰 현지상담소 82개를 운영중인데, 보호관찰대상자 편의 도모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범죄예방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현지상담실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형벌의 개별화, 사회내 처우의 적정성을 목적으로 소년범에 한해 도입된 판결전조사제도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 및 처우자료로 활용되는 등 범원으로부터 유용성을 인정받아 실무적으로는 성인범에 대해서도 활용중이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판결전조사제도를 성인범까지 확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 2003년도 판결전조사 총 4,040건 중 성인 1,433건으로 35% 점유

\* 조사자 의견과 법원 판결의 합치율 : 72.8% (2002년)

보호관찰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보호관찰 관련 자료의 축적과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보호관찰대상자 과학적 분류처우 시스템' 등 최신 선진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 추진 계획 |

형사사법체계상 역할에 상응한 조직체계의 구축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 인력·시설의 보강 추진

- 선진국 평균의 2배 수준인 직원 1인당 관리대상자 80여명 수준까지 점진적 증원
- 법원·검찰청에 상응하도록 향후 10년간 매년 2~3개 보호관찰기관 증설, 15년내 전 기관 자체청사 확보

##### 보호관찰의 선진화 추진 일정

2003. 12.	이동보호관찰(Mobile Probation) 시스템 개발
2004. 1.~ 12.	외출제한명령음성감독시스템 및 이동보호관찰시스템 시범실시
2004. 5.	보호관찰통합정보시스템의 Web 방식 전환, 통합자료관리 등 기능 강화
2004. 6.	외국 보호관찰제도 운영실태에 관한 자료 정비
2005. 1.~	외출제한명령음성감독 및 이동보호관찰 시스템 본격실시
2005. 12.	보호관찰대상자 과학적 분류처우시스템 개발 완료
2006. 1.~	보호관찰대상자 과학적 분류처우 본격 실시

#####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개정

2004. 6.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안) 확정
2004. 7.	개정안 국회 제출
2004. 10.~ 2005. 3.	하위법령 정비
2005. 4.~	시행

\*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 보호관찰업무의 내실화는 수립된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

#### | 추진부서 |

보호국

#### 구체적 과제 ④

## 소년보호교육기관 청소년범죄 대처시스템 강화

#### 추진 목표

- 청소년 비행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 모든 소년보호사건 대상자 비행성 진단 및 적기교육 실시
- 일탈행동 초기에 있는 학생들의 범죄예방을 위한 일반학교 부적응학생 특별교육 실시 등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비행예방 기능 강화

#### | 현황 |

종전 구속송치 대상자 위주로 시행해오던 분류심사제도를 불구속 송치자를 포함한 모든 소년보호사건 대상자로 확대하는 보호소년상담조사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대법원과 최종 정책 협의를 거친 후 2003년 7월 1일부터 서울 등 5개 고등법원 소재지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2002년 3월부터 시·도교육청과 협의에 의해 5개 소년분류심사원 및 4개의 분류심사 대행 소년원(전주·청주·춘천·제주)을 특별교육이수기관으로 지정받아 일반학교 부적응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2003년 3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소년분류심사원 교육 및 상담기간을 정규학교 출석일수로 인정하기로 하여 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학업단절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 | 추진계획 |

보호소년상담조사제 전국 확대시행

2004. 1.

보호소년상담조사제 전국 확대시행

2004. 1.~ 2006. 12.

보호소년상담조사제 전국 확대시행에 따른 소규모 소년분류심사원지

원 단계적 설치 추진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비행예방 기능 강화

2003. 12.

5개 소년분류심사원, 4개 소년원(부산, 전주, 청주, 춘천),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정 완료

2004. 1.~ 2004. 9.

보호소년상담조사제 시행과 체계적인 특별교육 실시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등 운영상 미비점 보완 및 법제화 완료

### | 추진부서 |

보호국



# 8

## 사회적 협의의 중요성 인식 확산과 법률문화 향상

**구체적 과제 ① 사회적 협의 인프라 구축과 지원**

**구체적 과제 ② 법률정보 확산과 정책홍보 강화**

**구체적 과제 ③ 법치주의·인권에 대한 대내외적 교육의 강화**

## 구체적 과제 ①

### 사회적 협의 인프라 구축과 지원

#### 추진 목표

- 사회적 갈등의 해결방식으로 대화와 타협, 법치주의 문화 확산
- 노사정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민간 조정위원회 법률 지원
- 법무행정에서의 시민사회 접촉면 확대로 사회적 협의과정에 참여

#### 현황

다원화된 사회에서 사회집단간 갈등과 분쟁이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절차는 아직 미성숙한 상태다. 사회적인 갈등이나 분쟁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해결원칙으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비법적인 해결방식, 즉 정치적, 물리적인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사회적 규범과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

법무·검찰 업무는 인권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인권보호는 공정한 법집행, 법질서 확립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정한 법집행과 법질서 확립 속에 실현되어야 하는 가치다. 인권존중의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사회적 차원에서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를 통해 누적된 법과 법집행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법률 경시 풍조, 일부 법규의 불합리성, 잔존하는 경직된 법집행 관행 등이 극복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여야만 사회적 협의과정을 존중하는 법률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

위법사항에 대한 사후적인 법집행에 그치지 않고,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갈등을 사전에 최소

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노사정위원회 등 상시적으로 제도화된 조정기구에 대한 법률 지원, 중재기구의 구성과 이에 대한 법률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에 해결함으로써 대화와 타협이라는 사회적 협의문화를 더 발전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조정과 타협의 절차적 준거가 되는 법규와 세도를 연구하고 이를 현실에 적합하게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과거 법무부는 법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논란에 대해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2003년 법무부는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인권단체들의 면담요청이나 공청회 참석 등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시민사회와 의견을 듣고 법무부의 입장과 방침을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또, 법무부 스스로 사회단체들이나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현안에 관한 워크숍, 간담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사회와의 접촉면을 확장하고,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려고 노력하였다. 시민사회와 정부 사이에 소통의 채널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 추진 계획

사회적 협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불합리한 법규들을 개정
- 노사정위원회를 비롯, 조정·중재기구에 대한 법률적 지원
- 법무정책 입안 및 집행시 공청회, 간담회의 수시 개최

#### 추진 부서

법무실, 검찰국

## 구체적 과제 ②

### 법률정보 확산과 정책홍보 강화

#### 추진목표

-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정보와 지식을 확산하여 법치주의 문화 정착의 기초 확립
- 소수자,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되는 법제도와 법무·검찰 정책과 개선 사항을 알려 부당한 인권침해와 피해를 방지

#### 현황

법무부는 국민들의 법률지식을 확대하고 법률분쟁 예방 및 해결에 일조하고자 「법과 생활」 책자를 국내용, 재외국민용으로 발행·배포하였다. 「법과 생활」은 법무부 홈페이지 ([www.klac.or.kr/ws05040h.html](http://www.klac.or.kr/ws05040h.html))에도 게재되어 있다.

#### 〈법과 생활〉 주요 내용

형사	형사사건 처리절차/ 즉결심판절차/ 고소에 관한 법률상식/ 고소·고발 관련 민원의 실질적 해소방안/ 배상명령제도/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특정범죄신고자등 구조제도/ 형사보상제도
민사	금전거래/ 보증/ 어음·수표 거래/ 신용카드/ 할부판매/ 전자상거래/ 공증제도/ 공탁제도/ 내용증명 우편제도
부동산	부동산 거래/ 부동산등기제도/ 부동산등기 특례제도/ 부동산실명제도/ 주택 임대차보호제도/ 주택임대차계약 해지시 보증금반환/ 상가건물임대차보호
민사소송	민사소송절차/ 소액심판제도/ 금전체권에 관한 강제집행절차/ 가압류(假押留)·가처분(假處分)/ 민사조정제도

가족법	혼인관계/ 친생자 및 양자/ 유언 및 유류분/ 재산상속/ 호적제도/ 가정폭력특별법
교통	교통사고의 법률문제/ 자동차 소유자의 유의사항
노동·사회보장	최저임금제도/ 체불임금과 퇴직금 청구절차/ 산재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 국민연금제도/ 장애인 등록제도/ 국가배상제도
환경	사전환경성검토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분쟁조정제도/ 기타 환경 관련 법률상식/ 환경 관련 국민생활 수칙
세금	조세의 개념과 일반원칙/ 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해외여행자 세관통관절차
헌법재판·국가인권위	위헌법률심판제도/ 헌법소원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기타	행정소송절차/ 행정절차제도/ 금융실명거래제도/ 여권발급절차/ 병역의무이행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청소년 적성검사실/ 시·군 등 민원봉사실

개인적·사회적 분쟁과 갈등을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기에 앞서 물리적·정치적 해결방법을 찾게 되는 것은 국민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받지 못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다. 법무부는 이용자에게 편리하도록 1층 로비에 민원실을 설치하는 등 민원서비스 절차를 개선하고,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자 및 대상사건의 범위를 확대하고 법률구조서비스를 내실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3년 만들어진 법무부 인터넷뉴스 「Open Law」는 법무부 전체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담고 있다. 또,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메일링 서비스를 신청하면 법무부 주요소식과 법률뉴스를 수시로 받아볼 수 있다. 2004년에는 「Open Law」를 통해 법무행정의 개선사항과 그 적용에 대한 해설을 강화함으로써 법무부 정책정보를 폭넓게 공개할 예정이다.

사회 다원화와 국민 권리의식의 향상에 따라 새로운 정책과 법률정보에 대한 수요자가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보편적 정보제공에서 나아가 대상에 맞게 특화된 법률정보 제공이 요구된다. 예컨대, 〈인권보호수사준칙〉의 개정과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 국선변호인 확대 등 일련의 개선조치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해 피의자들이 실질적으로 그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 하고, 증가하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우리나라 법제도와 법률상식을 알려 부당한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 | 추진계획 |

- 법률서비스 정보 확대
  - 「법과 생활」을 통해 제공되는 법률지식을 계속 업데이트해나가는 한편, 법률지식과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민간기관과의 연계망 구축.
  - 「Open Law」에 월 1회 법무정책 개선사항과 해설을 연재
  - 법률정보 수요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정보제공 방식의 지속적 개발
  - 법률상담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

#### | 추진부서 |

법무실, 공보관실

#### 구체적 과제 ③

### 법치주의·인권에 대한 대내외적 교육의 강화

#### 추진목표

- 공교육, 사회교육 영역에 법치주의 원칙과 준법교육 모색
- 법무·검찰업무에 사회적 협의와 인권적 인식을 내재화하기 위한 교육, 구조 마련

#### | 현황 |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는 법률적 해결방식의 가치와 준법의식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 이 교육은 전 사회적으로, 공교육·사회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특별히 법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으로 정착될 필요가 있다.



공교육, 사회교육으로서의 법치주의와 준법의식 교육은 장기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지역별 사회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교육내용과 프로그램의 개발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또 지역별로는 산하기관들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 지역 사회교육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준법·인권교육이 미래사회를 위한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지는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새로운 법률문화 수립을 위한 초석을 쌓기 위해서 아동과 청소년 대상 참여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 직원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연수원은 2003년 인권교육의 강좌수, 강의시간

을 대폭 늘렸다. 또, 법무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담당관실과의 기관협의를 상설화하였다. 그러나, 실제 교육내용에 있어서는 제도와 법에 대한 강의에 국한되고 국내 인권현안과 국제인권협약 등의 내용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지 못하여 '인권교육'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데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또, 검찰, 교정, 출입국관리 등 직무교육 대상자에게 교육할 인권교육내용의 연구주체 역시 형성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다.

\* 2003년 법무연수원의 인권교육 실적 : 인권강좌 110회 182시간, 그 중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이 개설강좌의 87%, 개설시간의 84%로 편중되어 있음.

#### 추진 계획

##### 교육부, 아동·청소년 교육기관과의 연계하에 청소년 대상 법률문화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산하기관별로 해당 지역 초·중·고등학교의 준법, 인권, 범죄예방 특강 요청에 적극 호응하고 지역 청소년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모색
- 법무부 산하시설의 견학 프로그램 확대
- 4.25. 법의 날 행사에 청소년 참여프로그램 강화 (법을 주제로 한 어린이 그림·글짓기 대회 등)
- 아동·청소년 인권단체, 언론과 연계하여 아동·청소년 인권 향상을 위한 캠페인 추진
- 어린이 법률·인권 캠프, 예비법조인 캠프 등 방학 중 특별연수프로그램 개발 검토
- 세계인권선언기념 법무부 인권심포지움에 아동·청소년인권 프로그램 결합 모색

##### 법무·검찰 인권교육 강화

2004. 3. 법무부·법무연수원 인권교육 태스크포스팀 구성 (법무부 인권과, 법무연수원 기획, 외부 인권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
2004. 4.~ 6. 법무·검찰 인권교육 현황진단과 과제 연구
2004. 6.~ 12. 2005년 법무연수원 인권교육 개선안 연구
- 법집행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인권교육 교안 마련
  - 검찰, 보호, 교정, 출입국관리 등 각 직무별 인권교안 마련

#### 법무연수원 인권교육 강화방안

- 인권감수성 개발, 인권보호 관련 내용 등으로 프로그램을 풍부화
- 교육과정에 인권교육 교과목을 필수적으로 선정
- 검사교육과정(신임 검사반 및 검사관리자반 교육과정)에 <수사과정의 적법절차론>, <국제인권규약 해설> 등을, 일반직·교정직 교육과정에 <수사와 인권>, <교정과 인권> 등을 포함시키는 등 직무수행에 직접 연계, 적용할 수 있는 교과목을 신설

#### 인권교육 강사진 확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담당, 각 관련 분야 교수, 변호사 뿐 아니라 인권현장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들을 초빙하여 각 분야별 인권의 현황과 쟁점을 교육

#### 인권교육 강의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 연수원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법무부 및 검찰 전 직원에게 확산

#### 추진부서

법무실, 검찰국, 법무연수원

# 추진 전략

우리 사회에 인권존중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무부는 4대 정책목표와 8대 정책과제를 수립하였다. 법무부는 정책목표와 정책과제를 수립하고 실현하는 과정을 통해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중·장기적 법무정책 생산부서로 발전해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법무부는 스스로 정책수립과 집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조직을 개편하고, 전문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한편, 법무정책이 현실성과 깊이를 갖기 위해서는 다양한 민간 부문의 경험을 수렴하여야 하고, 그 과정을 정부 정책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는 데 활용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정책목표와 정책과제의 실현을 위해서 법무부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민간 부문과의 접촉면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무부는 “법무부의 전문행정기관화”와 “열린 법무행정”을 법무정책 실현의 추진전략으로 삼았다.

## 1. 법무부 현황과 문제점

### 가. 법무부의 현황

본부 기구는 2004. 1. 31. 현재 2실 4국 5관 25과 6담당관으로 편성되어 있다.

#### (1) 기획 관리실

기획관리실에는 비상계획관, 기획검사,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시설관리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정보화담당관을 두고 있으며, 법무부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예산의 편성과 배정, 사업의 진도 파악과 심사평가, 조직 및 정원의 관리, 법무시설조성업무, 여성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총괄, 법무행정 전산화 기본계획의 수립과 국가 비상사태 대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2) 법무실

법무실은 법무심의관, 법무과, 국제법무과, 송무과, 인권과, 특수법령과, 법조인력정책과를 두고 있으며, 대통령·국무총리·행정 각부에 대한 법령자문 및 유권해석, 국내외 법무자료의 조사연구와 국제법무관계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 및 공증인 업무의 감독, 국적업무,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지휘·감독, 국가배상·헌법재판 관련 업무, 인권옹호사업, 법률구조와 인권단체에 대한 지휘·감독, 남·북한 통일 관련 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사법시험 등 관장, 법조인양성제도의 조사·연구 및 개선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 (3) 검찰국

검찰국은 검찰제1과, 검찰제2과, 검찰제3과, 검찰제4과, 연구검사 및 공직자등록재산조사단을 두고 있으며, 검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검찰권 행사에 대한 일반적 지휘·

감독, 범죄정보의 수집·분석, 범죄의 예방과 단속을 위한 대책 수립, 인권침해사건의 조사·처리 및 형사보상금지급사무의 지휘·감독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사무,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의한 재판관할권 행사문제와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사항, 그리고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집행 및 피보안관찰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의 업무도 맡고 있으며,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으로부터 조사 의뢰받은 공직자재산등록사무에 대한 조사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 (4) 보호국

보호국은 보호과, 관찰과, 소년제1과 및 소년제2과를 두고 있으며, 보호행정의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하여 그 원인 및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며, 소년범의 적정한 처우분류와 학과교육, 성행 교정 및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감호사건의 지휘·감독·결정을 하고, 법원의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판결 또는 결정의 집행 및 가퇴원·가석방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지도·원호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출소자·및 퇴원생에 대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숙식제공 등 사회 복귀를 돋는 생생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소년범에 대한 특성화교육과 인성교육, 적정한 처우분류,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 (5) 교정국

교정국은 교정심의관, 교정과, 보안제1과, 보안제2과, 작업지도과, 교학과, 관리과를 두고 있으며, 교정행정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용자의 수용·처우·이송과 교도작업의 계획·관리 및 수용자에 대한 교육·교학과 직업훈련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 (6) 출입국관리국

출입국관리국은 출입국기획과, 입국심사과, 체류심사과, 출국관리과를 두고 있으며, 출입국 관리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외국인의 입국사증 발급, 내·외국인의 출입국심사에 관한 사항, 외국인의 체류관리, 난민의 인정, 출입국사법조사, 외국인보호관리, 강제퇴거에 관한 사항, 국민 출국금지, 외국인의 출국정지, 출입국관리에 관련한 각종 통계작성 및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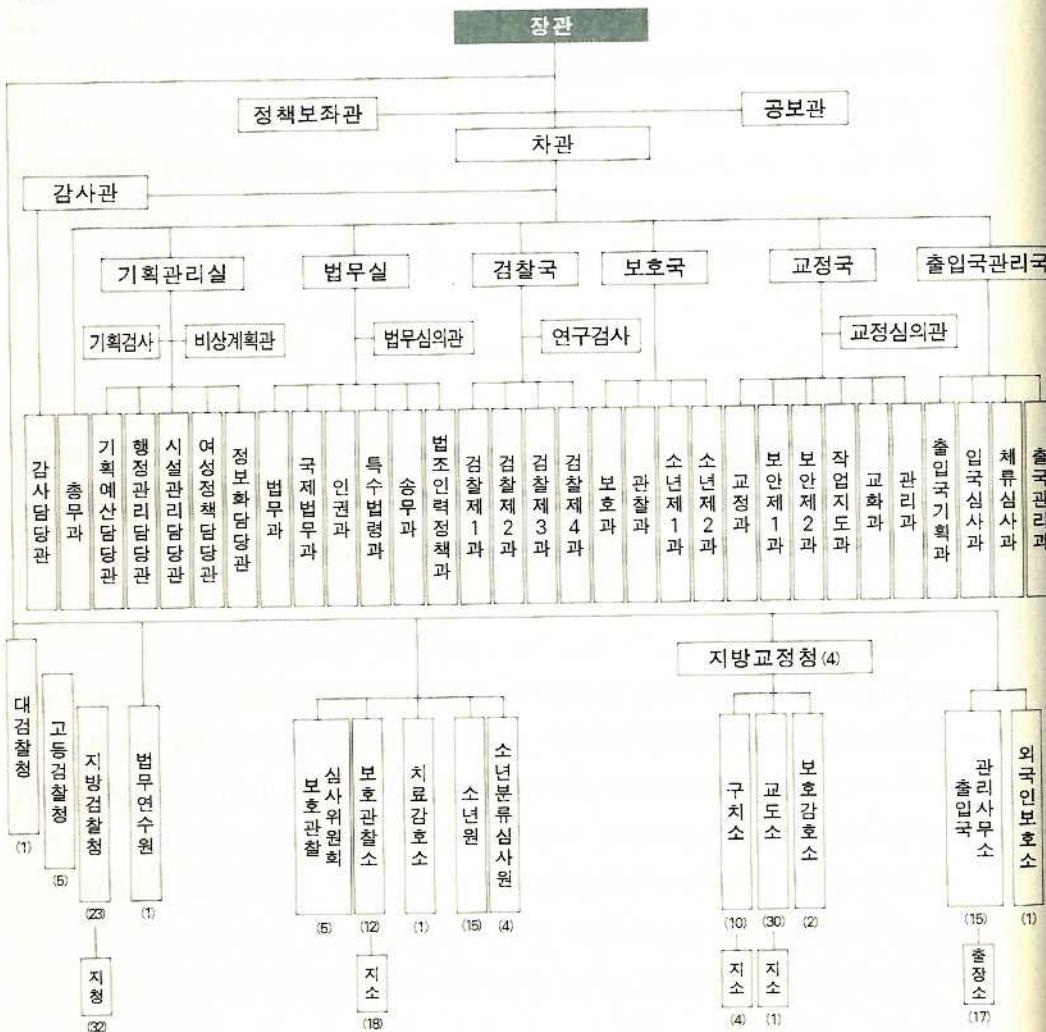
## (7) 기타

그밖에 공보관, 감사관과 총무과가 있는 바, 공보관은 공보업무를, 감사관은 본부 및 산하기관·단체에 대한 감사와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각각 맡고 있으며, 총무과는 보안·인사관리, 예산의 집행·결산 및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구		
구분	기구	기관수
본부	2실 4국	1
	검찰	61
	보호	55
산하기관	교정	51
	출입국관리	33
	연수원	1
	계	202

\* 산하 특수법인 2개(법률구조공단, 간생보호공단)

기구표 2실 4국 5관 25과 6담당관



#### 나. 법무부의 연혁

법무부는 1948. 7. 17. 정부수립과 동시 정부조직법(법률 제1호)의 제정·공포에 따라 설치되었고, 1948. 11. 4. 법무부직제(대통령령 제21호)로 1실 4국 21과가 설치되었다. 그후 법무부의 기구 변천과정은 다음에서 보는 표와 같다.

기구 변천과정							(2004. 1현재)
기간	48~59년		60~61년	62~72년	72~80년	81~ 현재	
조직	1실4국(48년)	3국(50년)	3국	2실3국	2실3국	2실4국	
기획 관리실	비서실			기획관리실 (63년 신설)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	
법무실	법무국 조사국	법무국	법무국	법무실 (67년 승격)	법무실	법무실	
검찰국	검찰국	검찰국	검찰국	검찰국	검찰국	검찰국	
보호국							보호국 (81년 신설)
교정국	형정국	형정국	형정국	교정국 (62년 변경)	교정국	교정국	
출입국관리국				출입국관리국 (70년 신설)	출입국관리국	출입국관리국	
정원 ( )은 검사수	148	83(전시)→ 68	68	170~246(7)	355(41)	403(44) →455(57)	



## 다. 법무부 조직체계와 운영의 문제점

### ◎ 검찰국 중심의 운영

법무부가 검찰국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법무·보호·교정·출입국관리 등 비검찰 분야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그뿐만 아니라, 법무행정의 전문화가 필요한 부서에 검사 등이 단기 순환근무를 함으로 인하여 정책부서로서의 전문성 축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위와 같은 검찰 및 검사 중심의 법무부 운영은 결국 법무·검찰의 인적·기능적 중복으로 인한 법무부와 검찰의 동질화를 가져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 이외의 다른 부서 및 해당 업무 담당자들의 상대적인 사기 저하 및 정책부서로서의 발전 지연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 ◎ 보호·교정·출입국관리 업무에 대한 지원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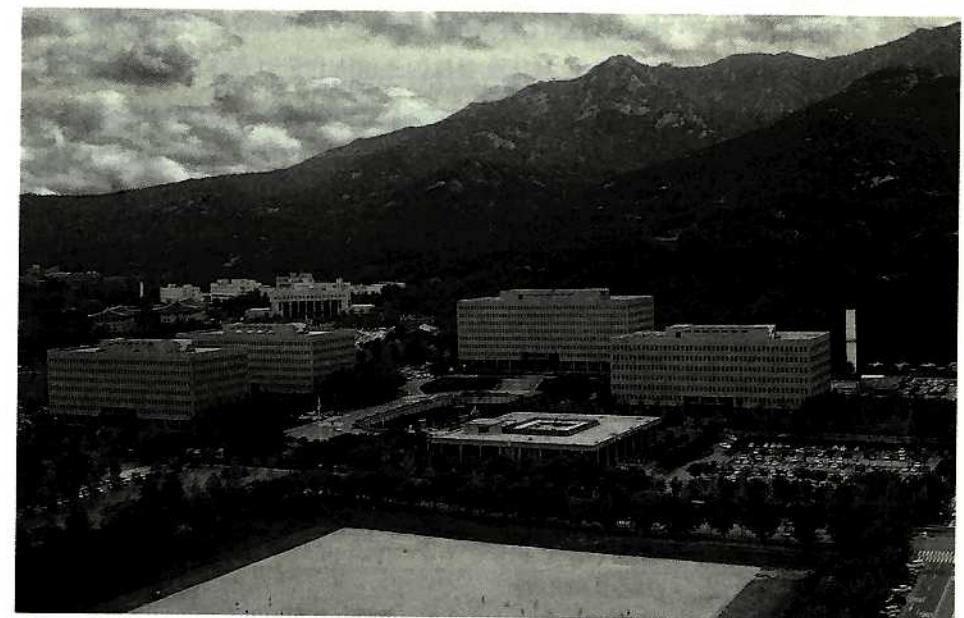
사회 전반의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보호·교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또, 국제적인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국가의 관문으로서의 출입국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변화된 조건에도 불구하고 보호·교정·출입국관리와 관련한 행정기능은 주로 현실에 대한 수시대응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중·장기적인 정책수립기능은 부족한 설정이다. 중·장기 정책의 부재는 정책수립과 추진을 위한 능동적인 예산 확보 노력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예산 부족 등 보호·교정·출입국관리 업무에 대한 지원 부족은 다시 해당 부서의 정책부서로의 발전에 대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 한편, 보호·교정·출입국 분야에 대한 지원의 부족과 정책부서로서의 발전 지연으로 인하여 보호·교정·출입국 분야에서는 고급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하여 정책 개발·집행 및 전문 인력 양성에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 ◎ 권위적·폐쇄적 기관이라는 인식

획일적 조직문화가 검찰을 지배하고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고,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이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알려져 왔다. 법무부에 대하여도 권위적이고 획일적인 조직문화가 창의성과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법무부가 권위적 기관이라는 인식으로 말미암아 국민 및 타부처에게 법무부의 기능이 규제적·억압적·방어적·보수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고, 이는 법무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어 왔다.

### ◎ 법률서비스기능에 대한 낮은 만족도

법무부는 출입국관리·송무·국적 등의 분야에서 국민 및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법률서비스에 대한 높은 기대와 요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실제 법무부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기능은 이러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어 왔다.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법률서비스를 법무부에서 베푸는 시혜적인 조치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이를 법무부의 책무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 2. 법무부 전문행정기관화

### 가. 조직개편

#### (1) 검토사항 개요

앞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법무부가 전문행정기관으로서 그 정책과제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정책기능 중심으로 그 조직을 개편하고자 한다. 그리고, 개편된 조직에서는 법무행정의 각 분야 전문가가 안정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법무부가 계획하고 있는 조직개편의 개요는 다음 표와 같다.

실·국별	검토사항	추진일정
기획관리실	• 기획연구기능의 강화·단일화	2003. 10. 추진착수 2004. 중 완료
	•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인권송무국 여성정책과로 확대개편	"
법무실	• 인권송무국 신설, 법무국으로 개편	2003. 10. 추진착수 2004. 중 완료
	• 국적업무를 출입국관리국으로 이관	"
검찰국	• 변호사 등의 적극 채용	2003. 10. 추진착수 2004. 2. 채용시작
	• 검찰 2,3과 통합	2003. 10. 추진착수 2004. 중 완료
보호국·교정국	• 형사법제과 신설	"
	• 연구검사실 폐지 (기획연구기능의 강화·단일화)	"
출입국관리국	• 가칭 「교정보호청」 신설	2003. 10 추진착수 2006. 중 완료
	• 국적업무를 출입국관리국으로 이관	2003. 10. 추진착수 2004. 중 완료
감사관실	• 이민청 신설	2010. 경 신설
	• 김찰실로 확대 개편	2003. 10. 추진착수 2004. 중 완료

#### (2) 구체적 검토

여기에서는 법무부가 계획중인 조직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을 각 실국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 (가) 기획관리실

###### 1) 기획·연구기능의 강화·단일화

###### 가) 검토 배경

현재 법무부의 기획·연구기능은 기획검사실, 연구검사실, 법무연수원, 대검찰청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는 기획·연구기능의 효율성 및 종합성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다.

###### 나) 개선 방안

기획관리실 기획검사실과 검찰국 연구검사실을 통합, 대폭 강화하여 기획관리실 소속으로 정책기획팀을 구성하고, 정책기획팀이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게 할 계획이다.

- 법무부 관련 중·장기 정책의 기획·연구, 제도개혁 연구 및 법무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의 검토 업무
- 기획관리실 조정·통제업무에 대한 지원기능

###### 2)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인권송무국 여성정책과로 확대개편

여성 권리옹호를 위한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인권송무국을 신설할 때 기획관리실 소속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인권송무국 여성정책과로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다.

##### (나) 법무실

###### 1) 인권송무국 신설, 법무국으로 개편

###### 가) 검토 배경

인권 옹호와 신장을 위한 법률 및 제도의 개혁은 법무부의 주요한 업무 중 하나다. 또, 법무부는 국가소송이나 행정소송 등 국가송무업무를 총괄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인권업무와 송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인권·송무업무의 충실화를 위해서 인권송무국의 신설이 필요하다.

#### 나) 검토 방안

법무실의 인권과, 송무과를 폐지하고, 인권송무국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권송무국이 신설될 경우 그 조직은 다음과 같이 운영될 예정이다.

- 인권관련 업무의 대폭 강화
- 인권송무국 신설과 동시에 5개 고등검찰청에 설치되어 있는 송무기획단을 분리하여 지방송무사무소(또는 지방송무청)로 재개편, 장기적으로 지방검찰청에도 위 개편안을 적용
- 지방송무사무소에 우선 검사를 배치하되, 점진적으로 변호사를 특채하여 배치

인권송무국의 신설에 따라 법무실의 조직은 축소될 예정이다. 법무실은 법무국으로 축소하여 법무심의관실, 법무과, 국제법무과, 특수법령과, 법조인력정책과 등으로 운영될 것이다.

#### 2) 국적업무를 출입국관리국으로 이관

##### 가) 검토 배경

국가간 인구이동 증가에 따라 출입국관리업무는 단순한 출입국의 관리에 그치지 않고 영주, 귀화, 국적회복 등 이민문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국가간 인구이동의 관리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 나) 검토 방안

국가간 인구이동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법무실 법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국적업무를 출입국관리국으로 이관하여 출입국관리국에 국적난민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적업무의 이관 후 법무과는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중요성이 커질 변호사, 공증 등에 관한 업무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 (다) 검찰국

#### 검찰제2,3과 통합 및 형사법제과의 신설

##### 가) 검토 배경

검찰제2, 3과는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을 보좌하고, 사면·복권 및 대국회업무를 수행하고, 검찰제2과는 일반 형사사건 관련 법령을, 검찰제3과는 공안사건 관련 법령을 담당한다. 한편, 검찰제4과는 형사법제 업무와 함께 형사분야 관련 국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검찰국의 업무 편제와 관련하여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과 관련된 일부 업무는 대검과 중복되어 비효율적이고, 형사법제 업무가 각 과에 분산되어 있어 형사법제에 대한 통

일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검찰제4과의 경우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검사가 형사법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증가하는 국제업무를 충실히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한 실정이다.

##### 나) 검토 방안

###### 검찰제2,3과를 통합

- 검찰제2,3과의 형사법제 업무는 후술하는 신설 형사법제과로 이관
- 통합과는 검찰사건에 대한 지휘·감독 보좌, 사면·복권, 대국회업무 수행
- 검찰제4과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는 통합과로 이관

###### 검찰국 내에 형사법제과 신설

- 검찰제2, 3, 4과의 형사법제업무를 신설되는 형사법제과로 이관
- 검찰제4과는 형사분야 관련 국제업무를 전담

※ 형사법제과 신설시, 검찰국 내의 각 과 명칭을 검찰과, 형사과, 국제과, 형사법제과 등으로 변경 검토

#### (라) 보호국·교정국

#### 가) 교정·보호 행정의 전문성·독자성을 확보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청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도 교정기능을 외청이나 독립된 부로 운영중이다.

##### 가) 검토 배경

교정·보호 행정의 전문성·독자성을 확보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청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도 교정기능을 외청이나 독립된 부로 운영중이다.

타 외청과의 인원 비교					
순번	기관명	인원	순번	기관명	인원
1	경찰청	96,102	7	농촌진흥청	2,052
2	철도청	29,623	8	통계청	1,692
3	국세청	16,845	9	병무청	1,491
4	검찰청	8,002	10	산림청	1,433
5	해양경찰청	5,082	11	기상청	1,066
6	관세청	4,140	12	특허청	953

※ 교정국, 보호국 총인원은 합계 19,185명으로서 경찰청, 철도청에 이어 3위 규모



#### 나) 검토 방안

법무부는 교정국, 보호국을 폐지하고, 법무부 외청으로 가칭 「교정보호청」의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교정보호청의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여 그 하부조직을 구축하고, 각 청과의 업무 연락 및 정책 자문을 위하여 법무부 기획관리실 소속으로 교정보호심의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마) 출입국관리국

##### 이민청 신설 검토

###### 가) 검토 배경

출입국관리 행정의 전문성·독자성을 확보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외청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미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도 이민 기능을 외청으로 운영 중이다.

###### 나) 검토 방안

출입국관리국을 이민청으로 외청화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나, 현재 출입국관리국의 규모가 크지 않고 이민청 신설이 긴급한 사안은 아니므로, 이민청 신설문제는 출입국관리업무의 증가추세 및 종합적 대처 필요성의 정도 등을 검토해나가면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바) 감사관실

##### 감찰실로의 확대개편 추진

###### 가) 검토 배경

현재 법무부 감사관실 기능이 미약하여 교정·출입국관리 등 산하기관에 대한 효율적 감사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 검찰에 대한 외부 감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나) 검토 방안

감사관실을 감찰실로 확대하여 검찰, 보호, 교정, 출입국 등 산하기관을 포함한 법무부 소속 전체 공무원에 대하여 실질적인 감찰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확대

개편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감사관실 인력의 증원(현재 14명)
- 차관 직속에서 장관 직속으로 격상
- 대검찰청의 감찰기능은 현행대로 존속하되 법무부 감찰실에 대검찰청의 감찰에 대한 지휘·감독기능을 부여하고, 필요시 보총감찰을 병행하도록 함

※ 법무부 감찰실 감사의 적정성을 감시·견제하기 위하여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감사위원회' 설치 검토

## 나. 전문가의 양성

### (1) 변호사 채용의 확대

###### 가) 검토 배경

그간 법무부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검사의 단기 순환근무로 인하여 법무부의 전문성 축적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무부가 담당하는 법률 관련 업무를 장기적으로 수행할 법률전문가를 채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변호사 대량 배출시대를 맞아 법무부 전문화 차원에서 신설 예정인 인권송무국, 법무국 등에 변호사, 국제전문가 등을 특채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크다.

###### 나) 검토 방안

법무실 내의 직위 중 법률전문가나 기타 전문가들이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를 특채하여 장기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교정·보호·출입국관리국에도 법률 관련 업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해당 국의 전문 행정 인력들의 전문성 보강을 통하여 법률 관련 업무의 내실화를 꾀하는 것과 함께, 법령의 해석이나 제·개정시에 법률전문지식을 제공할 법률전문가를 채용할 필요가 있다. 교정·보호·출입국관리국에서도 법률업무 강화를 위하여 변호사 채용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2) 행정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사·교육의 개선

### (가) 우수인력의 확보

법무부는 각 법무행정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행정전문가를 필요로 한다. 특히, 보호·교정·출입국 분야의 경우 정책부서로 발전하기 위해서 우수인력 확보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예컨대, 비교적 최근에 활성화된 보호관찰의 경우, 정책적 기능을 담당할 우수인력의 확보는 보호관찰대상자수의 폭증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P93, 개청 이후 보호관찰 직원 대비 보호관찰대상자 증가 현황 참조). 이에 우수인력의 확보를 위해서 법무부는 정책부서로서의 발전 전망을 명확히 하는 한편, 행정고시 선발인원을 확대하고,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나) 전문성 측정을 위한 인사제도의 운영

전문성 측정을 위해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신규로 채용될 인력이 특정 분야에서 장기 근무하도록 인사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 해당 전문분야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측정된 전문성이 법무정책의 발전으로 귀결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 (다) 전문화 교육

#### 민간기관에서의 공무원연수 확대

다변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발전 성과를 적극적으로 정부 내에 유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법무부는 민간기관에서의 공무원 연수를 확대함으로써 민간 부문과의 적극적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공무원의 전문성 증진에 중요한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자칫 정체되거나 쉬운 공직사회에 활력과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 공무원 연수 및 연수결과 관리시스템의 개선

법무행정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교육·연수와 민간기관과의 교류가 개인적 체험으로 만 머무르지 않고 법무부 전체의 전문성 증진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연수 및 그 결과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그 개선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될 것이다.

- 연수결과를 토대로 한 토론 조직화
- 토론결과와 정책을 연계시킬 각 실국 단위 연구팀의 활성화
- 연수결과 및 연구팀 단위 토론결과의 데이터베이스화

## 3. 열린 법무행정

### 가. 개방형 임용의 확대

#### (1) 검토 배경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거나 효율적 정책수립이 필요한 직위에는 공직내외의 경쟁을 통해 적임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법무행정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정 직위에 대하여 내부직원 이외에 정부 내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과 정부 밖에 있는 민간인들에게까지 해당 직위를 적극 개방할 계획이다.

#### (2) 법무부 운영 현황

개방형 임용의 방법은 개방형 직위제도와 정원대체 계약직 공무원제도가 있다. 법무부는 본부 6개, 소속기관 25개 등 총 31개의 개방형 직위를 지정할 수 있는데, 현재 개방형대상직위로 6개의 직위가 지정되어 있다. 한편, 법무부는 정원대체 계약직 공무원제도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국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그 업무의 선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국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2003년 12월 외부 전문가를 출입국관리국장으로 임용하였다.



### (3) 법무부 직위의 외부개방 추진 방향

#### (가) 기본방향

법무부는 본부의 정책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요직위의 외부개방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외부개방의 확대 규모는 본부와 소속기관간, 각 실국간의 외부개방 균형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 (나) 개방형대상직위의 범위

검사 직위는 개방형직위제도나 정원대체 계약직공무원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아 왔으나, 법무부 전문행정기관화 차원에서 검사 직위에도 외부 법률전문가를 영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업무 성격상 특히 법률전문지식이 필요한 법무실의 일부 직위를 외부 법률가에게 우선 개방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획관리실·검찰국·보호국의 직위에 대해서도 외부 전문가에게 개방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장기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 나. 민간 부문과의 협력시스템 구축

### (1) 민간 부문과의 협력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행정에 민간 부문에서 축적된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민간 부문과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열린 법무행정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협력시스템은 민간 부문의 행정 참여를 통해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할 것이고, 또 행정에 대한 대국민 설득력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 (2) 구체적 방안

#### 법무부정책위원회 활동의 강화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에 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법무부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위원회로부터 중요한 법무·검찰 개혁과제에 대한 자문을 받아왔다. 2003년 법무부정책위원회는 총 12인 중 9인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 소속된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법무·검찰 개혁에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이 제시되는 통로의 역할을 해왔다. 법무부는

2004년 이후에도 법무부정책위원회를 통해 법무행정에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각 실국별 정책자문단의 활성화

각 실국별 정책입안과 집행과정에 민간 부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민간 부문의 연구성과를 받아들여 법무행정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각 실국별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정책자문단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각 정책과제의 추진계획에는 정책의 수립과정에서부터 민간 부문의 전문가들이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각종 연구팀 또는 정책자문단을 구성하는 계획이 반영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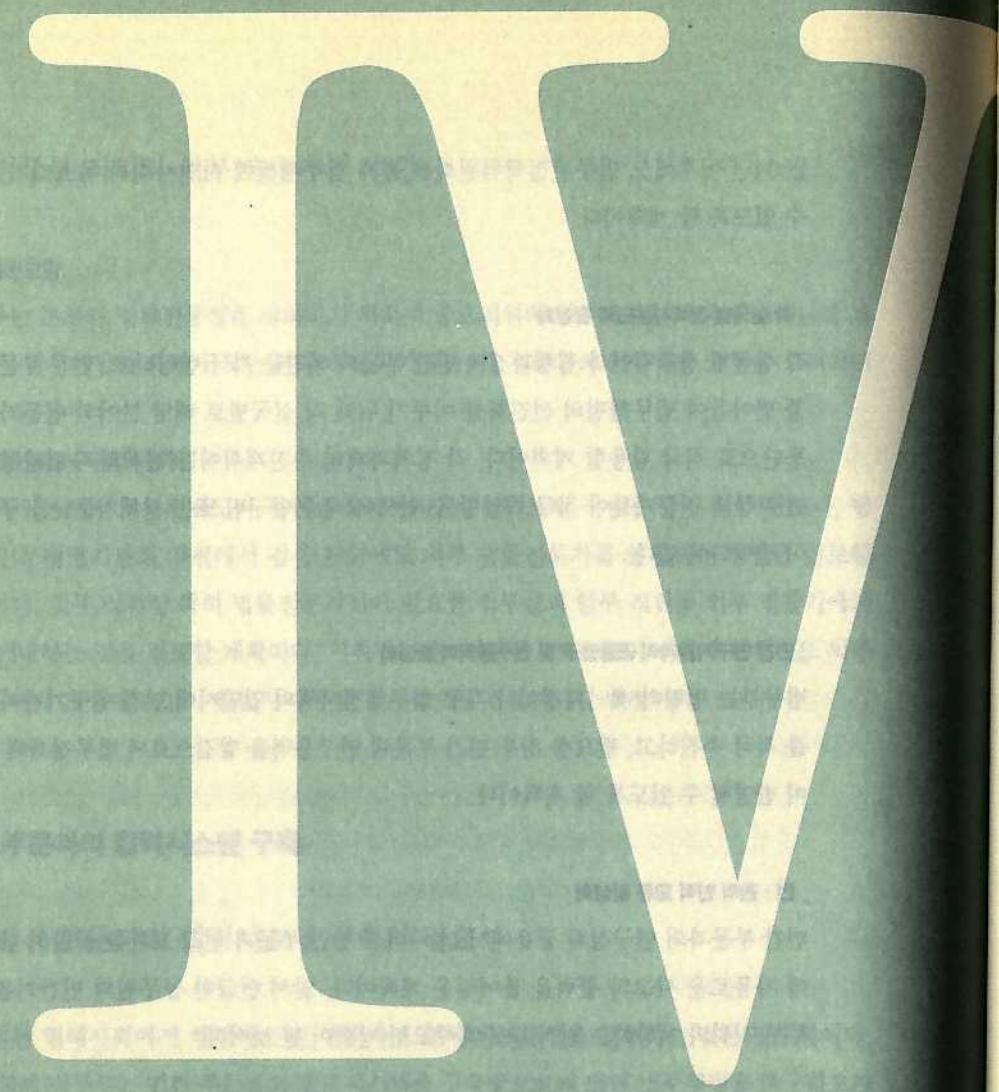
#### 민간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연구용역의 활성화

법무부는 법령의 제·개정이나 각종 법무행정시책의 입안시에 민간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적극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 부문에 연구용역을 맡김으로써 법무정책에 다양한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민·관의 인적 교류 활성화

민간 부문과의 연구성과 공유에서 더 나아가 민간 부문과 인적 교류를 활발히 함으로써 행정에 자유로운 사고와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앞서 언급한 공무원의 민간기관 연수 및 법무부 직위의 개방화는 인적 교류의 주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

# 2003년 법무부 개혁의 성과



## 1. 사회 발전과 인권존중의식을 반영한 법령의 연구 및 개정

###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법령·제도 정비

법무부는 인권 향상을 위하여 유엔의 인권 관련 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입법을 추진하고 있거나, 개정안을 마련중인 법안은 다음과 같다.

- 호주제도를 시정한 민법중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2003년 11월 6일 국회에 제출(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권고사항)
- 여아의 혼인연령 상향조정(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아동의 부모면접교섭권 보장(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을 반영하기 위해 현재 가족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민법 개정을 논의중이며, 2004년도에 민법중개정법률안을 마련할 예정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

법무부는 2001년 12월 27일 국회에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을 제출하였는바, 2003년 12월 22일 국회 의결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제정되었다. 동법의 주요 내용은 기업의 경영투명성과 증권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증권시장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액투자자의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증권시장에서의 허위공시, 부실감사, 주가조작 등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현행 민사소송 외에 집단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는 것이다. 동법이 시행된 후에는 다수의 피해자 중 1인이나 수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로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되고, 그 판결의 효력이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에게 미치게 된다. 주가조작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는 2005년 1월 1일부터, 2조원 미만 기업의 경우는 2007년 1월 1일부터 동법이 적용된다.



### 구속피고인 무죄 등 선고시 즉시 석방제도 시행

법무부는 2003년 8월 1일부터 구속피고인에 대해 무죄, 집행유예 등이 선고되었을 때 다시 구치소 등에 환소시킨 후 석방조치하던 종전의 방식을 개선하여 구속피고인에 대해 무죄 등 선고 즉시 법원에서 석방조치하도록 하였다.

### 공안사법 및 공안관련사법 등에 대한 가석방 심사시 준법서약제도 폐지

공안사법의 가석방 심사시 제출받아 온 준법서약서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수렴하여 '준법서약서'를 완전히 폐지하였다(법무부정책위원회에서 2003년 7월 7일 이를 권고하기로 의결, V. 3. (2) 참조). 2003년 7월 31일 준법서약제 근거규정인 가석방심사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시행하였고, 준법서약서 작성시기, 방법 및 준법서약자 처우 등에 관한 규정이 담긴 공안및공안관련사법처우요강을 2003년 8월 1일 개정, 시행하였다. 이러한 규칙 등의 개정으로 준법서약서는 완전히 폐지되었고, 일부 준법서약서 관련 규정을 정리하기 위하여 귀휴시행규칙및수형자분류처우규칙을 개정중이다.

### 불구속 수사 확대

법무부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구속사건의 비율이 계속 감소되고 있다. 2003년도에도 전년도에 비하여 그 비율이 감소하였다(2003년도 1월부터 11월까지의 구속사건 비율 3.9%).

최근 5년 구속사건비율 변동 추이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5.8%	4.5%	4.4%	4.2%	4.0%

###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 정비 지원

법무부는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개정(안), 남북교역물품의원산지확인에관한고시 등 7개 법령의 제·개정을 지원했고, 방북승인 등 인적 교류, 북한물품 반입 등 물적 교류 관련 의견회신, 남북교류협력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법적 지원을 하였다. 특히,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에 따른 법적 지원을 강화했는데, 경협관련 남북회담에 대표로 참여하여 합의타결 등 현장에서의 법적지원과 각종 합의서 관련 문제점 검토, 남북경제협력 개별 사업별 법적 지원을 수행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연구결과를 토대로 "북한 개성공업지구법 분

석", "북한 금강산관광지구법분석", "남북교류협력 관련 판례집"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 기본법 해설" 등의 자료를 발간하였다. 한편, 법무부는 통일을 대비한 법무정책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3년 6월 5일 특수법령과 근무 경력 법률전문가, 전문위원 및 연구위원 등 총 38명으로 통일법무지원단을 구성하였다.



## 2.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외국인정책의 수립

###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출입국관리법령 정비

산업연수생의 신분으로만 취업이 가능하던 외국인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신분을 합법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이 2003년 8월 16일 공포되었다. 동 법률 제정에 따라 출입국관리법령을 개정하여 체류자격(E-9:비전문취업)을 신설하는 한편, 4년 미만의 불법체류자에 대한 합법화 신청기간을 설정·운영하여 대상자 227,757명의 80.9%인 184,199명을 합법화하였다.

### 중국동포 입국절차 개선

법무부는 2003년 5월 10일 중국동포의 입국 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중국동포 입국절차를 개선하였다. 중국동포 친척방문 허용 연령을 현행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국내 체류실태가 견실한 중국 출신 한국 국적 취득자에 대하여 연간 2명 이내의 친척 초청을 허용하였다.

### 외국인 지문날인제도 개선

2003년 12월 18일 외국인 지문날인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동법 개정안은 지문날인대상을 '범법 외국인 및 1년 이상 체류하는 20세 이상 등록외국인'에서, ①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조사를 받거나 기타 다른 법률에 위반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자, ②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자, ③ 기타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안전이나 이익을 위하여 특히 지문을 찍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축소하였다. 지문날인 방법도 잉크식에서 전자식 지문채취 방법으로 전환하였다.

### 난민인정 확대

법무부는 난민인정 신청기회 확대를 위해 신청기간을 입국일로부터 6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2002년 3월 30일 출입국관리법 개정), 난민인정실무협의회 위원에 대한 적십자사 등 민간단체 위촉을 확대(2002년 6월 1일 실시)하는 등 난민인정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왔다. 2003년에는 개선된 절차에 따라 난민인정 심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03년에 12명을 난민으로 인정하였고, 현재 인정된 난민은 총 14명이다.

### 혼인귀화절차 개선

2003년 4월부터 혼인귀화 신청자에 대한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2003년 9월부터 종전까지 서울에서만 접수하던 혼인귀화신청을 전국 7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접수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3년 10월부터는 한국인과 혼인한 후 자녀를 출산한 자가 귀화신청을 한 때에는 체류동향 조회를 생략하고, 면담 및 서류심사로 신속히 귀화를 허가하도록 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를 다각도로 개선하였다.



### 3. 법률서비스기능의 강화

#### 협정비공무사건 피해보상 사전지급절차 도입

SOFA합동위원회에서 2003년 5월 30일 주한미군에 의한 공무 이외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하여 미국측에서 장례비 등을 사전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합의하였다. 이 합의에 따라 2003년 7월 23일 「협정비공무사건 사전지급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여 이를 시행하였다.

#### 법무부 정보공개청구제도 개선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소관과에서 비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거부사유의 타당성에 대하여 송무과의 의견을 거치도록 정보공개청구제도 운용을 개선하였다. 이는 법무부 내에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통일적 법적용이 이루어지게 하고, 나아가 법무부 내의 자체 심사를 통해 정보공개가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국민의 정보에 관한 접근권을 더 넓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통상법률 지원 활성화

「도하개발아젠다 법률지원반」을 활성화하여 농업·비농산품·서비스·지적재산권·뉴이슈 등 주제별로 5개 자문팀을 운영하여 정부 부처의 통상 현안에 대한 법률 지원으로 '정부내 로펌'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도하개발아젠다 서비스협상 등 국제회의 및 협상에 15회, 국내 대책회의에 48회 참가하였고, 50건의 통상 관련 법률자문 회신업무를 수행하였다. 또, '한·베트남 투자보장협정', '한·중 투자보장협정',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자 간 통상협상에 직접 참가하여 분쟁해결절차 등에 대한 법률지원을 하였다. 그 밖에 '수출 중소·벤처기업 지원변호사단'을 통하여 수출 중소·벤처기업에 대하여 총 37건의 무역·투자 관련 법률상담 및 분쟁해결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

#### 해외동포에 대한 법적 지원 확대

해외동포에 대한 법률상담을 활성화하였다. 미국, 일본, 중국 주재 법무협력관이 현지 순회 법률상담을 하였고, 총 601건의 인터넷, 팩시밀리 등을 통한 해외동포 법률상담을 처리하였다. 법무부 홈페이지 '해외동포 법적지원' 코너에 유형별 상담사례를 게시하여 총 11,431회 조회가 이루어졌다. 또, 해외동포용 법률상담책자 『법과 생활』 2003년도 개정판을 발간하여 해외공관 등에 5,000여부를 배포하였다.

#### 인터넷 법률상담 강화

인터넷을 통하여 법률정보 및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 상담실에 공익 법무관 6명을 증원하고 초고속국가통신망을 설치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터넷 법률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사이버 상담실에서는 2003년도에 82,455건의 상담을 하였다.

#### 법률구조대상자 확대

2003년 1월부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여성들에 대하여 무료법률구조를 시행하고, 2003년 6월부터는 모·부자복지법상 보호대상인 모·부자가정에 대해 무료법률구조를 확대 시행하였다. 그리하여 2003년에는 전 국민의 28.5%가 법률구조 대상자가 되었다. 한편,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하여 노동관계사건뿐만 아니라 민사, 가사, 행정, 헌법소원사건에 까지 내국인과 등등한 수준의 법률구조를 실시하였다.

연도	법률구조사업 실적						단위: 건
	민사사건 등 법률구조		형사법률구조		법률상담		
계	소송전구조	소송구조	계	형사	국선		
2003	44,437	999	43,438	16,705	7,067	9,638	1,001,370
2002	33,310	1,256	32,054	11,606	6,866	4,740	899,285
증감(%)	33.4	-20.5	35.5	43.9	2.9	103.3	11.4

## 4. 사회적 약자의 권리 향상

### 수용시설 출장법률상담제 실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들이 교도소, 구치소 및 소년원 등 총 63개 수용시설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출장법률상담을 실시하여 수용자들의 고충에 대한 상담과 법률적 지원활동을 강화하였다. 2003년 6월 16일 전국 44개 교도소·구치소의 수용자들에 대하여 출장 법률상담을 시작하고, 2003년 9월 1일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등 63개 시설로 출장상담을 확대하였다. 2003년 6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3,387건의 법률상담이 이루어졌다.

### 군산교도소에 장애인 진단·직업훈련시설 설치 운영

2003년 10월 국내 최초로 장애인 전용수용동과 장애인 직업훈련원을 설립하여 장애수형자들을 대상으로 6개월~1년 과정의 한식조리, 양복재단, 컴퓨터, 제과제빵 등 4개 직업훈련과정을 개설하였다. 특히, 군산 장애인수용시설과 직업훈련관은 개관과정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군산장애인연합회 등 민간단체들로 구성된 모니터팀으로부터 장애시설심사를 받고, 직업훈련 종목을 전체 장애인수용자들의 설문을 통해 정하는 등 행정과정에 민간전문가와 수용자들이 참여하는 개방적 협력모델을 창출하였다.

### 여성수용자 유급 보건휴역 실시

2003년부터 여성수용자들에게 매월 1일의 유급 보건휴역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월평균 357명의 여성 수용자들에게 유급 보건휴역이 실시되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03년 11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치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진술과정을 영상물에 의하여 녹화(동법 제21조의2 신설)
-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신문 또는 조사하는 경우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함(동법 제22조의3 제3항 신설)
- 법원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도록 함(동법 제22조의4 신설)
-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경우,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동법 제22조의6 제1항 후단 신설)



## 5.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

### 기소 즉시 기록 열람·등사의 전면 허용

2003년 4월 30일부터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개시 전 사이에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변론권을 강화하였다.

### 항고심사회 제도 시범시행

2003년 7월부터 대구고등검찰청에서 항고심사회 제도를 시범시행하였다. 항고심사회 제도는 고등검찰청의 항고사건 결정과정에 변호사, 법학 교수 등 외부위원이 참여, 기록검토 등을 거쳐 의견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시민참여를 통한 검찰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 검찰수사 특별모니터링제 시행

대검찰청 중수부에서는 2003년 9월 검찰 특별수사와 관련하여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특별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검찰청과 서울지방검찰청에 시범적으로 검찰수사 모니터링 팀을 구성하였다. 모니터링 요원은 전체 연령대와 전국 거주지를 포함할 수 있도록 관내 자치단체장, 교수, 시민단체 종사자, 언론인 등 각계각층에서 115명을 선정하였다. 무보수 명예직인 모니터링 요원들은 검찰 특수수사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활동을 한다.

### 검찰·국세청 공조협의체 구성

검찰은 2003년 10월 부패사법 단속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세청과 중앙협의회 및 13개 지방협의회를 구성하였다. 또, 중요 탈세정보를 교환하고 수사 및 범죄조사 상호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 범죄정보 합동분석·지원반>을 구성하였다.

## 6. 검사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립

###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검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규정으로 개정

2003년 12월 30일 검찰청법을 개정하여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수정하였다. 개정전 검찰청법에서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상명하복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어 동 원칙이 검사 개개인의 독립적인 검찰권 행사를 저해하고 검사의 권한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통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정책위원회는 2003년 8월 13일 이러한 비판적 시각에 기초하여 검사동일체의 원칙 수정 권고안을 의결하였다(V. 3. (1) 참조). 이에 법무부는 상명하복을 중심으로 한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검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규정으로 수정하였다. 또, 지휘·감독의 적법성 및 정당성에 대한 이의제기권 규정을 신설하였다.

### 검사 직급 폐지 및 단일호봉제 도입

2003년 12월 30일 검찰청법 및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의 개정을 통해 검사 직급을 폐지하고 검사 보수에 단일호봉제를 도입하였다(법무부정책위원회에서 2003년 11월 10일 이를 권고하는 안을 의결. V. 3. (1) 참조). 이는 검찰의 수직적 구조를 개선하여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사의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평생검사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위 법률의 개정으로, 1) 고검장·검사장 직급이 폐지되고, 검사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로 단순화되었고, 2)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의 보수체계가 단일호봉제(1호봉 내지 17호봉)로 변경되었다.

### 검찰인사위원회 운영 개선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찰인사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하고, 그 심의가 실질화될 수 있도록 구성과 운영방법을 개선하였다(법무부정책위원회에서 2003년 6월 24일 이를 권고하는 안을 의결. V. 3. (1) 참조). 검찰인사위원회규정을 개정하여, 1) 위원회에 외부인사의 참여를 확대하였고(2인에서 2인 이상으로), 2) 부장검사 및 평검사가 검



찰인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고(내부위원 자격을 고등검사장·검사장에서 검사로 변경), 3) 위원장에 외부위원도 위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003년 12월 30일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찰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규정하였다. 2003년 7월 위와 같이 개정된 검찰인사위원회규정에 따라 외부위원 3인(그중 1인이 위원장), 부장검사, 평검사 등이 참여한 검찰인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03년 하반기 검사 인사는 위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졌다(2003년 하반기 인사 당시에는 검찰청법이 아직 개정되지 아니하였으나, 검찰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와 같이 운영하였다).



## 7. 범법자 사회복귀 및 재범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

### 교정시설 현대화 및 의료환경의 개선

수용환경의 개선을 위한 교정시설의 현대화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2003년에 이루어진 시설개선은 다음과 같다.

- 2003년 11월 청주여자교도소 신축이전
- 순천교도소 등 4개 시설 신·개축 공사 진행(순천교도소, 충주·통영 구치소 2004년 준공 예정, 포항교도소 2005년 준공 예정)
- 서울구치소 여사 증축 공사 진행(2004년 상반기 준공 예정)
- 마산교도소 등 5개 기관 확장실 개선
- 대구교도소 등 10개 기관 난방시설 개선

교정시설의 의료환경 개선작업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3년도에 이루어진 의료환경 개선은 다음과 같다.

- 서울구치소 등 7개 기관 의무과 진료실 개선
- 초음파진단기 등 의료장비 158점 신규 구입
- 수용자 1인당 연간 진료비 68,000원으로 인상(전년대비 15.3% 인상, 2002년도 59,000원)
- 공중보건의사 13명 증원(2002년 32명 / 2003년 45명)
- 교정공무원 47명 간호조무사양성기관에 1년 위탁교육(2003년 3월~2004년 2월)

### 수용자 교육 및 직업훈련의 확대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돋기 위하여 교정시설에서는 2003년 일반 교육과정과 직업훈련과정을 더욱 확대하여 운영하였다. 교육 및 직업훈련의 2003년 성과는 다음과 같다.

- 전문학사과정 확대운영(순천 청암대학 - 40명, 청주 주성대학 - 80명)
- 수용자 학력취득자격 기회 확대(2003년도 검정고시합격 1,110명 - 고졸 648명, 고입 396명, 중입 66명)

- 정보화교육 2003. IT 관련 자격취득 2,652명
- 컴퓨터 관련 직업훈련인원 연 4,580명

일반교육 및 직업훈련 이외에도 수용자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클래식음악선집 <일상이 아름다운 음악>을 제작하였다. 이 클래식음악선집은 1일 3곡씩 4주 간 들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그 기획 및 음악의 선정에 문화계의 전문가가 결합하였다는 점에 특색이 있는바, 이러한 경험은 향후 교정·교화 프로그램의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수용자 원격화상접견 확대 등 차우 개선

접견하고자 하는 수용자가 수용된 교정기관으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경우, 접견자의 편의를 위하여 접견자가 가장 가까운 교정기관에 방문해서 법무부 정보고속망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으로 화상접견을 할 수 있게 하는 원격화상접견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2003년에는 7개 기관에서 실시되던 원격 화상접견을 44개 전 교정기관으로 확대하였다. 2003년 12월 현재 화상접견 실적은 36,815건이다. 한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정시설 내에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3대 종교 이외의 소수종교(여호와의 증인, 이슬람교 등)를 믿는 수용자들에 대하여 종교집회를 허용하였다.

#### 출소자 사회성착 지원

교정시설에서 출소하는 사람들은 출소 후 취업기회의 부족이나 생계곤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재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교정기관은 재소자들이 출소 후에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돋기 위하여, 교정기관별로 수용자 취업알선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고, 2003년도에 671명의 출소자에게 취업을 알선하였다. 나아가 교정기관은 취업 및 생계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정적인 지원도 하였다. 취업이 예정된 무연고자에 대하여는 신원보증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 생계곤란자에 대하여는 출소와 동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2003년 지원 인원 850명).

#### 보호행정 관련 법령·제도 정비

법무부는 2003년 소년원법의 개정, 소년심판절차의 개선 등 보호행정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정비를 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년원법 개정(2004. 1. 20. 공포): 소년원 학교를 정규학교화, 수용·교육기간 단축상황을 고려하여 퇴원

상한 연령을 23세에서 22세로 하향 조정, 불구속 송치소년에 대한 보호소년상담조사제 규정, 사후지도 및 일반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규정 신설

- 소년심판절차개선(2003. 7. 1. 시행): "보호소년상담조사제" (다음 항목 내용 참조)와 "분류심사관심리참여 제도"를 도입
- 기타: 재범자에 대한 업무처리기준 정비,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시스템 운영지침 제정, 보호관찰대상자 분류 지도지침 개정 등 보호관찰 관련 각종 지침 20여건 제·개정

#### 보호소년상담조사제 실시 및 소년원 특성화교육의 다양화·전문화

종래 구속송치소년 위주로 비행원인을 규명하고 비행성 제거를 위한 교육, 지도지침을 제공해오던 분류심사제도를 2003년 7월 1일부터 불구속 송치자를 포함한 모든 소년보호사건 대상자로 확대하는 보호소년상담조사제를 시행하였다. 보호소년상담조사제란 불구속 송치 범죄소년에 대하여 법원 소년부 판사가 주간에만 4~6일 소년분류심사원에 출석케 하여 진단받을 것을 명하고, 소년분류심사원은 해당 소년의 비행원인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 후 소년의 비행성 제거를 위한 특별교육을 시키고 귀가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소년원 특성화 교육의 다양화·전문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설 및 교육과정을 신설하였다.

- 2003. 9. 예능소년원(안산예술종합학교) 신설
- 부산소년원 등 5개 소년원에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무의탁 소년들을 위한 중부권 자립생활관 신축

#### 보호관찰 협력사업 확대와 과학적 관리시스템의 도입

한국청년연합회 등 118개 기관·단체와 멘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103종의 보호관찰 관련 협력사업을 전개하였다. 공개모집 등의 방법으로 범죄예방위원을 더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인사들로 충원하였고, 2003년 한해 동안 2,434명에게 선도예방 전문화교육, 1,156명에게 보호관찰 전문화교육을 실시하였다. 한편, 보호관찰소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는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출석상담에 소요되는 시간적, 경제적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현지상담실을 설치(전국 82개소)하고 보호관찰관이 매달 두세 차례 지정된 일자에 출장하여 해당 지역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지도상담을 실시하였다.

보호관찰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출제한명령음성감독시스템 및 이동보호관찰(Mobile Probation)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여,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였다. 외출제한명령음성감독시스템(CVS)은 심야시간대 재범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심야 외출을 제한하기 위해 컴퓨터로 제어하는 자동전화로 대상자의 재택 여부를 확인·감독하는 시스템이

고, 이동보호관찰시스템은 PDA(휴대용 단말기), 무선통신망, 지리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보호관찰대상자를 관찰하는 시스템이다. 위 시스템들은 2004년에 시범실시될 예정이다.

#### 보호감호제도 개폐 검토

보호감호제도에 대하여는 이중처벌이라거나 그 운영이 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법무부는 2003년 보호감호제도의 개선 또는 존폐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왔다. 법무부정책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 문제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나, 정책위원들 사이에 보호감호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운영하자는 의견과 보호감호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이에 정책위원회는 보호감호제도의 존폐 여부에 대하여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 다만 그 결론이 도출될 때까지는 그 적용범위를 최소화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하였다(V. 3. (2) 참조). 법무부는 우선 보호감호제도의 적용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3년 가출소를 대폭 확대 시행하여 2003년 12월 31일 현재 피감호자는 전년에 비하여 대폭 감소한 898명이 되었다(2002년 12월 31일 피감호자는 1675명). 가출소의 확대와 함께 가출소자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생보호공단 내에 가출소자 전담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숙식보호 및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등 가출소자 지원시스템을 강화하였다.

전년도 대비 가출소 인원 (전년대비: 1~12월)			
구분	2002년	2003년	비율
인원	339명	1,115명	229%증가

연도별 피보호감호자 수용현황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수용인원	1,640	1,546	1,603	1,675	898

## 8. 사회적 협의의 중요성 인식 확산과 법률문화 향상

#### 법무연수원 인권교육 강화

법무연수원의 검사, 교정직, 일반직 교육과정에서 인권강좌 시간이 대폭 증가하였다(2003년도 총 110회 182시간).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교육 관련 협의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인권교육의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법무부 국제인권강좌

법무부는 인권과를 비롯한 법무부 내 인권 관련 부서의 인권에 대한 전문적 소양을 높이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국제인권법 전공 교수, 인권변호사 등을 초빙하여 2003년 10월부터 11월까지 5회에 걸쳐 국제인권강좌를 실시하였다.

#### 공안부 검사 세미나 <화요강좌> 실시

2003년 9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화요일 10차례에 걸쳐 공안부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국현대사와 남북관계, 노사관계 등을 주제로 한 화요강좌를 운영하였다. 화요강좌는 외부강사의 강의와 대검, 서울지검, 법무부 공안담당 검사들이 참여하는 자유토론으로 구성되었는데, 강의와 자유토론에서는 공안사건의 기초가 되는 사회문제 및 이에 대한 역사적, 사회과학적 분석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 세계인권선언기념주간 법무부 행사

기념식 · 포상 위주의 세계인권선언기념식을 폐지하고, 세계인권선언기념주간에 인권을 모티브로 법무부 전 업무영역을 포괄하는 세미나들을 개최하였다. 법무부는 위와 같은 세미나들을 정착시켜 세계인권선언기념주간에 1년 업무를 인권적 차원에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인권보고대회 및 심포지움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2003년에 열린 세미나는 다음과 같다.

2003. 12. 8. 인권 심포지움 : 사생활비밀의 보호  
2003. 12. 10. 수사와 인권  
① 여성, 아동, 장애인, 외국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② 수사 관련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에 대한 방지대책  
2003. 12. 12. 노동사건 관련 간담회  
2003. 12. 23. 정벌 및 계구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 2003년 정책위원회 활동 및 의결 내용

## 1. 목적

법무부는, 법무정책의 수립에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관 자문기구로 법무부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법무·검찰 개혁과제의 개발과 연구를 담당하고 법무부정책위원회 회의를 준비하는 실무단위로 정책기획단을 구성하였다.

## 2. 구성

### (1) 법무부정책위원회

#### 구성

위원장	안경환 (서울대 법대 학장)
부위원장	정상명 (법무부 차관)
위원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권태선 (한겨레신문 편집부국장) 김상준 (대법원 재판연구관) 박상기 (연세대 법대 학장) 배종대 (고려대 법대 학장) 이재희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공동대표) 이종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 박상길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문영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전문위원	김진석 (인하대 인문학부 교수) 양현아 (서울대 법대 교수) 여현덕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상훈 (국민대 법대 교수)

#### 입무

21세기 법무·검찰의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자문  
법무·검찰의 쇄신을 위한 각종 개혁방안을 심층 논의한 후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자문

### (2) 법무부 정책기획단

#### 구성

단장	이훈규 검사
상근단원	김준호 검사, 윤진원 검사, 이병래 정책보좌관, 양난주 정책보좌관, 김태훈 교정감
비상근단원	각 실·국 주무과장, 여성정책담당관 및 연구검사 2인

#### 임무

법무부정책위원회 운영 지원  
법무·검찰의 개혁방안을 연구하여 위원회에 회부



### 3. 활동내용

법무부정책위원회는 2003년 17회에 걸친 회의에서 법무·검찰의 개혁과 관련된 12개의 의안을 처리하였다. 처리된 의안 중 의결된 11개의 의안은 법무부의 정책으로 반영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1개의 의안(보호감호제도 개폐 검토)에 대하여는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법무부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의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1) 검찰 개혁과제

##### 검찰인사위원회 운영 개선 (2003. 6. 24. 제5회 회의)

###### 가. 추진배경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인사위원회의 운영을 더욱 실질화할 필요성 제기

###### 나. 의결내용

검찰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확대  
• 외부위원을 "2인"에서 "2인 이상"으로 수정(검찰인사위원회규정상 위원은 7인 이상 9인 이내)

부장검사·평검사의 검찰인사위원회 참여  
• 내부위원 자격을 고등검사장·검사장에서 검사로 변경

위원장에 외부위원도 위촉이 가능하도록 개선  
• 위원장을 고검장 중 지명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위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 위원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기구화  
• 검찰인사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실질화

##### 검사동일체의 원칙 개선 (2003. 8. 13. 제8회 회의)

###### 가. 추진배경

검찰청법상 검사동일체의 원칙 관련 규정이 그 진정한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상명하복 일변도로 규정되어 있어 검사 개개인의 독립적인 검찰권 행사를 저해하고 검사의 권한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통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

###### 나. 의결내용

검찰청법 제7조의 제목을 '검사동일체의 원칙'에서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으로 변경  
검찰청법 제7조제1항의 내용을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에서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로 개정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권 신설

##### 검사 직급 폐지, 단일호봉제 도입 (2003. 11. 10. 제15회 회의)

###### 가. 추진배경

검찰의 수직적 구조를 개선하여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사 지위를 유지하고, 신분보장 강화로 평생검사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고등검사장·검사장 직급을 폐지하고 검사 단일호봉제를 도입할 필요

###### 나. 의결내용

고등검사장·검사장 직급을 폐지하고, 검사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로 단순화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의 보수체계를 단일호봉제(1호봉 내지 17호봉)로 변경

##### 검사 직무대리제도의 확대 (2003. 9. 19. 제11회 회의)

###### 가. 추진배경

중간층 법조인력을 활용하여 경미사건처리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장기적으로 일본의 부검사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바, 그 중간단계로 현재 지청에만 인정되고 있는 검사 직무대리제도를 지검까지 확대시행할 필요성 제기

###### 나. 의결내용

검사직무대리제도를 본청까지 확대  
• 위임하는 직무의 범위는 법무부령에서 규정  
※ 위임하는 직무범위를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 제기가 있어 정책기획단에서 이에 대한 의견 제출  
• 불구속사건중 악식명령을 청구할 인지, 고발사건  
• 혐의없음을 제외한 불기소처분의견으로 송치된 사건

#####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개선 (2003. 9. 19. 제11회 회의)

###### 가. 추진배경

체포된 피의자의 법관대면은 인권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므로 법관대면 여부를 피의자

등의 신청 및 법관의 임의적 판단에 의하게 하는 현행 제도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  
※ 1999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한국 제도는 판사의 심리를 받지 않도록 회유할 수 있는 제도로서 국제인권규약  
제9조 제3항 위반' 이라고 지적

#### 나. 의결내용

-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의 전면 확대
  - 다만, 문제점과 보완할 점(영장발부에 대한 항고 필요성, 조서작성의 필요성)은 법무부에서 운영중인 형사소송법개정 검토회의에서 다시 검토하여 줄 것을 권고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2003. 10. 2. 제12회 회의)

##### 가. 추진배경

2002. 12. 27. 대검지침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제도를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할 필요성 제기

##### 나. 의결내용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제도 도입
  - 변호인뿐만 아니라 피의자도 변호인 참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 피의자의 체포 · 구속 후 48시간 이내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은 두지 않기로 함
  - ※ 현재 대검지침상으로는 이 경우 변호사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음
  - 그 외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는 변호인 참여에 대한 자의적인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

#### 국선변호인제도 확대 (2003. 10. 30. 제14회 회의)

##### 가. 추진배경

현행 국선변호인제도의 필요적 변호사건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국선변호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구속 피의자의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 제기

##### 나. 의결내용

- 구속 피고인 및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게까지 국선변호인제도를 확대
  - 국선변호의 질적 향상, 국선변호인의 자유선임 · 기피제도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

## (2) 법무행정 개혁과제

#### 법무부 조직개편 (2003. 10. 15. 제13회 회의)

##### 가. 추진배경

법무부 조직을 슬림화하고 인권보호기능 · 법률서비스기능을 확충하여 법무부를 전문행정기관화하기 위하여 법무부 조직개편 필요

##### 나. 의결내용

- 인권송무국 신설, 교정보호청 외청화
- 국적업무를 출입국관리국으로 이관
- 검찰국 검찰제2, 3과 통합, 형사법제과 신설
- 기획검사실과 연구검사실 통합, 정책기획팀 신설
- 변호사 적극 채용
- 감사관실을 감찰실로 확대 개편

#### 준법서약제 폐지 (2003. 7. 7. 제6회 회의)

##### 가. 추진배경

공안사범의 가석방심사시 제출받아 온 준법서약서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 제기

##### 나. 의결내용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적극 수용하는 차원에서 「준법서약제」를 완전 폐지

#### 보호감호제도 개선방향 논의 (2003. 6. 9. 제4회에 논의 시작, 계속 논의중)

##### 가. 추진배경

보호감호가 이중처벌이라는 비판이 있고, 그 운영이 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어 보호감호제도의 개폐에 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그 개선 방향을 정하고자 함

##### 나. 추진 경과

- 개정론과 폐지론 대립
  - **개정론** | 범죄로부터의 사회방위의 필요성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이 곧 보호감호제도 자체의 문제점은 아니므로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제도를 운영(존폐론의 논의는 그 다음 단계의 문제)
  - **폐지론** | 장래의 위험성만을 근거로 인간을 구금하는 것은 부당 / 사실상 이중처벌인 보호감호제도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보호감호제도의 폐지



### 논의 현황

- 폐지 또는 개정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논의 계속, 2~3월중 개폐 여부 결정
- 개폐 여부의 결정시까지 보호감호제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할 것을 촉구



## 인권존중의 법질서

펴낸날 2004년 2월 10일  
펴낸이 법무부 정책기획단  
펴낸곳 법무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법무부(우 427-720)  
02-503-7023 [www.moj.go.kr](http://www.moj.go.kr)  
디자인 디자인아이즈 [www.design-is.com](http://www.design-is.com)  
인쇄 정민프린터크

우리 사회에 인권존중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무부는 4대 정책목표와 8대 정책과제를 수립하였다. 법무부는 성책목표와 정책과제를 수립하고 실현하는 과정을 통해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중·장기적 법무정책 생산부서로 발전해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법무부는 스스로 정책수립과 집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조직을 개편하고, 전문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한편, 법무정책이 협식성과 깊이를 갖기 위해서는 다양한 민간 부문의 경험을 수렴하여야 하고, 그 과정을 정부 정책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는 데 활용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정책목표와 정책과제의 실현을 위해서 법무부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민간 부문과의 접촉면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무부는 “법무부의 전문행정기관화”와 “열린 법무행정”을 법무정책 실현의 추진전략으로 삼았다.